

계룡시 고시 제2021 - 105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42-2번지 일원에 추진 예정인 (가칭) 충남 남부권1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10월 21일

계 룡 시 장

□ 제한지역 및 면적

- 대상지역 :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42-2번지 일원
- 대상면적 : 117,527㎡

(총 262,770㎡ 중 145,243㎡ 기 고시(계룡시 고시 제2021-51호))

□ 제한사유

- 향후 추진 예정인 (가칭) 충남 남부권1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며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사유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.

□ 제한기간

- 제한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간 (※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)

□ 제한대상 행위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,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
 -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
 - 토지의 형질 변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)
 - 토석의 채취
 - 토지 분할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)
 - 녹지지역·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

□ 제한대상 제외 행위

- 제한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·승인·인가·허가·신고된 개발행위
- 기존 건축물의 증축, 재축, 개축 및 가설 건축물의 건축(단, 기존 건축물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계룡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에 한한다)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
-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
- 그 밖에 개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계룡시장이 인정하여 계룡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행위

□ 개발행위허가 제한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

□ 열람장소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(042-840-2912)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관계도서(지형도면)는 계룡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음

계룡시 공고 제2021- 705호

「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」를 일부개정하는 데에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1일

계 룡 시 장

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 계층까지 요금감면 대상 확대 지정(안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)
- 기존 “국가보훈대상자”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”으로 대상 명확화(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)
- 기존 “국민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장애인 세대”를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등록된 세대로 대상 명확화(안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)

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충남 계룡시 장안로 59-13 계룡시 상하수도과
- 전자우편 : shindigy@korea.kr
- 팩 스 : 042-840-2189

4. 그 밖의 사항

○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상하수도과(전화 042-840-2181, 팩스 042-840-218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(www.elis.go.kr)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, 제3호, 제4호, 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, 제7호, 제8호, 제9호, 제10호를 각각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,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구당 가정용 요금율을 적용한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 목별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다.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

라.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요금 감면) ①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37조(요금 감면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1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가구당 가정용 요율 을 적용한 10톤에 대항하는 사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 목별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 한다.</u></p> <p>가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 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</p> <p>나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p> <p>다.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</p> <p>라.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</p>

1. 「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물의 재이용 수를 사용하는 자

2. 「계룡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물의 재이용 수를 사용하는 자

2.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<삭 제>

3.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단위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<삭 제>

4. 국민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<삭 제>

5.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월 단위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

<삭 제>

6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
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

7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한다.
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한다.

8.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

5.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

수의 경우

9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“심각”으로 발령된 경우. 이 경우 업종별 요금 중 가정용, 일반용에 해당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월 단위 요금을 연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침 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군부대, 관공서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한다

10.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의 경우 사용량을 해당 업종 상수도사용료로 환산하여 30%를 감면하고,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20%를 감면한다.

수의 경우

6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“심각”으로 발령된 경우. 이 경우 업종별 요금 중 가정용, 일반용에 해당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월 단위 요금을 연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침 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군부대, 관공서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한다.

7.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제2호-----

-----.

계룡시 공고 제2021- 706호

「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하는 데에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 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1일

계 룡 시 장

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행 규칙의 사항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」 제37조 개정에 따른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(안 제29조제1항)

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충남 계룡시 장안로 59-13 계룡시 상하수도과
- 전자우편 : shindigy@korea.kr
- 팩 스 : 042-840-2189

4. 그 밖의 사항

○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상하수도과(전화 042-840-2181, 팩스 042-840-218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(www.elis.go.kr)

계룡시규칙 제 호

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7조제1항제7호”를 “제37조제1항제5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 (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) ① 조례 제37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옥내누수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9조 (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) ① -- 제37조제1항제5호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